

## 〈별표89〉 3대주요기관암 분류표

- ① 약관에 규정하는 3대주요기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통계청 고시 제2020-175호, 2021.1.1. 시행)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3대주요기관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.

분류항목	분류번호
1.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	
- 식도의 악성 신생물	C15
- 위의 악성 신생물	C16
- 소장의 악성 신생물	C17
- 결장의 악성 신생물	C18
-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	C19
- 직장의 악성 신생물	C20
- 항문,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	C21
-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	C26
2. 간, 담낭, 담도 및 췌장의 악성 신생물	
-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	C22
- 담낭의 악성 신생물	C23
-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	C24
- 췌장의 악성 신생물	C25
3. 폐의 악성 신생물	
- 기관의 악성 신생물	C33
-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	C34
-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	C39

### 【유의사항】

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지침서의 "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"에 따라 C77~C80(불명확한,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)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(암)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(최초 발생한 부위)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C77~C80(불명확한,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)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.

- 주)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.
-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,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.
-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.